

의안 번호	208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4.(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5. 4.(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5. 23.(화)

2. 제안설명 요지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023. 3. 2.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출장의 합리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안 제4조)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 강화(안 제5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 「공무원 여비규정」 제31조 및 별표 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신옥범)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출장의 합리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지방공무원법

-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

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의안 번호	208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4.(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5. 4.(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5. 23.(화)

2. 제안설명 요지(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023. 3. 2.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출장의 합리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안 제4조)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 강화(안 제5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 「공무원 여비규정」 제31조 및 별표 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신옥범)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출장의 합리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

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

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